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 (부승찬의원 대표발의)

의 안 번 호 8121 발의연월일: 2025. 2. 13.

발 의 자:부승찬·조계원·윤후덕

이정문 • 한정애 • 박선원

안규백 · 임오경 · 이개호

강선우 · 강대식 · 이재관

박민규 · 허 영 · 차지호

의원(15인)

제안이유 및 주요내용

현행법은 장기복무 군인이 의무복무기간을 마친 경우에만 본인의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고 있으며,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인은 현역 복무가 적합하지 않은 경우 본인의 의사에 따르지 않고 각군 전역심사위원회에서 심의를 거쳐 전역시킬 수 있도록 하고 있음.

이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이 남은 군 성범죄 피해자의 경우 본인의 희망에 따라 전역할 수 없으며, 전역하기 위해서는 전역심사위원회에서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을 받거나 질병·심신장애 등을 이유로 의병제대를 해야 하는 실정임. 그러나 현역복무 부적합 판정 등으로 전역하는 경우 전역 후 취업 등에서 불이익을 받을 우려가 있어 군 성범죄 피해자는 성범죄 피해로 인하여 군복무를 지속하기 어려운 경우에도 쉽게 전역할 수 없는 문제가 있음.

이에 군 성범죄 피해자는 의무복무기간 중에도 본인의 의사에 따라 전역할 수 있도록 하여 이들이 군이나 사회에서 입을 수 있는 후속 피해를 방지하려는 것임(안 제35조제3항 신설 등). 법률 제 호

군인사법 일부개정법률안

군인사법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.

제35조제3항을 제4항으로 하고, 같은 조에 제3항을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.

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중 「군형법」 제92조, 제92조의2부 터 제92조의6까지의 범죄행위의 피해자는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 간을 마치기 전이라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.

제35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중 "제35조제1항 및 제2항"을 "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하고, 같은 조 제2항 전단 중 "제35조제1항 및 제2항"을 "제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"로 한다.

부 칙

제1조(시행일) 이 법은 공포 후 6개월이 경과한 날부터 시행한다.

제2조(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에 관한 적용례) 제35조제3항, 제35조의 의2제1항 및 제2항의 개정규정은 이 법 시행 이후 전역을 지원하는 경우부터 적용한다.

신 • 구조문대비표

혅 행 개 정 아 제35조(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) 제35조(본인의 의사에 따른 전역) ① · ② (생 략) ① (현행과 같음)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군복무 <신 설> 중 「군형법」 제92조, 제92조 의2부터 제92조의6까지의 범죄 행위의 피해자는 제7조에 따른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이라 도 전역을 원하면 전역할 수 있다. ③ (생략) ④ (현행 제3항과 같음) 제35조의2(지원 또는 본인의 의 제35조의2(지원 또는 본인의 의 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) ① 임 사에 따른 전역의 제한) ① --용권자 또는 임용권을 위임받 은 자(이하 이 조에서 "임용권 자등"이라 한다)는 제7조제1항 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 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 35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 3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-역을 원하는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(지원에 의하지 아니하 고 임용된 하사는 제외한다. 이 하 이 조에서 같다)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때

에는 전역시켜서는 아니 된다. 다만, 제1호, 제3호 및 제4호의 경우에는 그 비위의 정도가 제 57조제1항 후단에 따른 중징계 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는 경우 로 한정한다.

- 1. ~ 4. (생략)
- ② 임용권자등은 장교, 준사관 및 부사관이 제7조제1항에 따라 의무복무기간을 마치기 전에 전역을 지원하거나 제35조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전역을 원하는 때에는 해당 장교, 준사 관 및 부사관이 제1항에 따른 전역 제한 대상에 해당하는지 를 수사기관등의 장에게 확인 하여야 한다. 이 경우 확인요청 을 받은 수사기관등의 장은 요 청받은 날부터 10일 이내에 해 당 사실을 통보하여야 한다.

③ (생 략)

1. ~ 4. (현행과 같음)
②
제35조
제1항부터 제3항까지
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</u>
<u>제1항부터 제3항까지</u>
제1항부터 제3항까지